

종사자 윤리 지침.

요양보호사 : 김지영.

※ 요양보호사의 윤리 지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 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 직업윤리 원칙.

- ◆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 ◆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 ◆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 ◆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한다.
- ◆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 ◆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 윤리적 태도.

- ◆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은 후 실행한다.
- ◆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 ◆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자신의 행동이 모든 요양보호사의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 ◆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 ◆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약속은 꼭 지키며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대상자와 개인적인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된다.
- ◆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 무능력, 태만.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물건을 팔거나 고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복지용품을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대상자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 사생활이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하는 행위.
 할당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 ◆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여야하며 사고 발생시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 ◆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요양 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공된 요양 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면 동법 29조에 의한 급여의 제한과 제67조 벌칙, 제 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1.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자.
2.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윤리지침: 수급자에게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직원의 기본: ① 직원은 요양원 보호사로 증거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요양사의 발전.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수급자의 대한 윤리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확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자존기능, 장점 및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목적

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윤리지침은 인간존엄성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분신 및 신체적 사회적 안녕의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은 결함시키기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추적 요소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윤리지침은 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직원과 서비스 이용 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추에 대한 책임)

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직원은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 가정에서 반영 할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대처함에 있어 윤리경영이
 거행하는 문화는 이해하고 협력 할수 있도록 환경과 윤리 책임 신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를 이루여간다

제4조 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입선 대상자에 대한 윤리 실천 지침

(의사소통)

- ① 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직원들은 요양보호대상자들에게
 존대말과 존칭을 사용한다 부적절한 반말은 절대로 보다는 이해를 할수있도록
 주의하여 신중한 언어 사용을 하도록 한다
- ② 요양보호 대상자와 대화시에는 눈을 마주친 적절한 어조의 목소리로
 근접치듯 하면 듣기 힘든 소리를 분명한 해리으로 대상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입모양으로 잘 보이도록 하신 필요시 몸짓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혼돈상태의 요양 보호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때 미소는 짓는다거나 접촉에 대한
 반응을 확인 하면서 접촉을 건행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혼돈상태의
 대상자에게도 욕구가 있음을 확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선택의 자유
 요양보호 대상자의 자유허를 존중한다 특별히 케어 제공시 이치양이나 선택적
 등이 관련된 개인 취향이나 생활의식 등의 선택 거부에 대한 선택은
 존중하여 건강상태와 안전에 문제가 없으시 서비스는
 거부할 권리 또한 존중한다

⑤ 묘양보존 대상자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한다

직원뿐 아니라 봉사자등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한다

⑥ 직무의 사례 관리나 초기면접 등과 같은 대상자나

그가족을 통해서 알게된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직무나 관계 없이 일로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대상자에 대한 토론을 벌이지 않는다

⑦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 될수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⑧ 대상자에 대한 일지등을 누구나 볼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 하지 않는다 혹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면 그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수있는 정보를 삭제한다

⑨ 사생활 보호

묘양보존 대상자의 허락없이 신체에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노출하거나

신체적 접촉 화장실 이용등의 개인적 용무 우편물이나 전화사용 등의

사생활 등을 보장 되어야 한다

⑩ 대상자의 사적 공간을 보장한다 건강상태나 안전이 허락되는

한 개인 소지품의 소장을 존중하며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⑪ 홍보물 영상이나 회지 등에 쓰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는

사전에 묘양보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비복 방문객

촬영이나 녹음의 행위도 묵인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⑫ 묘양보존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기록은

보관할때 관리자 및 보관 장소를 정하여 사생활을 보호한다

“종사자 윤리지침”은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직업적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각 분야마다 별도의 윤리지침이 존재합니다.

【요양보호사 윤리지침】

①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요양보호사는 성실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에 힘쓴다.

② 이용자(어르신)에 대한 윤리

- 어르신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한다.
- 어르신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학대나 착취를 금지한다.
- 어르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한다.
- 어르신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어르신에게 동등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③ 직무수행에 대한 윤리

- 업무를 수행할 때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 금품, 선물,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 부당한 지시나 비윤리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④ 동료 및 기관에 대한 윤리

- 동료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등과 협력과 존중의 관계를 유지한다.
- 기관의 규정과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서로의 발전을 위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⑤ 사회에 대한 책임

- 요양보호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킨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 기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 ▶ 기관의 명예와 신뢰 유지
- ▶ 사회의 법과 규범 준수
-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과 판단
- ▶ 환경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수행

♥ 요약하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돌보는 전문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종사자 훈기 지침

이 순목 요양보호사

· 종사자 훈기 지침 교육

요양보호사의 손길은 환우의 돌봄을 넘어 어르신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훈기적 실천이다.

· 종사자 훈기 지침 교육의 목적

강기 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훈기 의식을 높이고 어르신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 훈기 지침 교육의 중요성

어르신은 신체적, 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차별과 착대에 노출하기 쉬운 대상이다.

종사자의 말과 행동 태도가 어르신의 삶의 질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훈기 지침 교육은 존중, 공감, 책임을 바탕으로 돌봄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다.

· 종사자가 지켜야 할 훈기 지침 핵심 원칙

1. 존엄성 존중

어르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자율성과 선택권 보호

식사, 복장, 활동 등 어르신의 의견을 우선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3.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공간, 신체노출, 건강 정보 등은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4. 차별과 편견금지

성별, 장애, 질병,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리자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6. 권유선과 책임감 유지

업무 중에는 개인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유가를 지키는 돌봄, 관계를 지키는 실천

종사와 후원자 모두 인간 관계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사람답게 대하는 태도이다. 요양보호사는 작은 실천 하나가 그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존엄하게 만드는 가장 짧은 돌봄이 된다.

종사자 윤리지침

김정애

1.인간 존엄과 인권존중

- * 어르신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나 차별을 하지않는다
- * 종교, 장애, 연령, 경제적 수준등에 따라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 * 어르신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한다.

2.전문적 서비스 제공

- *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 한계를 알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한다.
- * 업무중에는 청결,안전,위생,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지킨다.
- * 허위기록, 대리성명,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3.비밀보장

- * 어르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 * 업무중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4.성실과 책임

- *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 * 근무시간을 지키고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을 하지않는다.
- * 돌봄 중 발생한 문제는 즉시 보고하고 숨기지 않는다.

5.공동체와의 협력

- * 동료 간호사 사회복지사등과 협력하여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 *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6.사회적 책임

- *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직업윤리를 지키는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
- * 음주,폭행,폭언,금전문제 등으로 직업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 종사자는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밀을 지키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